



보건복지부



수신 수신자 참조
(경유)

제목 노인복지관 대상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신청 안내 관련 협조 요청

1. 코로나-19로 인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연명의료결정제도의 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 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.
2. “연명의료결정제도”는 2018년 2월부터 시행된 「호스피스·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」에 근거하여, 국민의 존엄하고 편안한 생애말기를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에 따라 19세 이상인 누구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밝혀둘 수 있습니다.
3. 2022년 3월 22일부터는 개정된 「호스피스·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」의 시행에 따라, 노인복지관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 등록할 수 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.
4. 이에 따라, 다음 사항을 참조하시어 귀 단체 소속 또는 관 내의 노인복지관들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.

- 다 음 -

○ 등록기관 지정 대상

- 「지역보건법」 제2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
- 「의료법」 시행규칙 제27조제4항에 따른 의료기관
-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*
* 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
-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
- 「노인복지법」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관

○ 지정 일정

- 공고 : 2022.4.4.(월), 보건복지부 홈페이지
- 지정 신청 기간 : 2022.4.11.(월) 9시 ~ 4.22.(금) 18시
- 서면 심사 및 현장 점검 : 2022.4.25.(월) ~ 5.13.(금)
- 결과 통보 : 2022.5.27.(금)

○ 제출 서류 및 제출처

- 제출 서류 : 첨부자료 내 지정신청서 및 각종 서류 등(공고문 참고)
- 제출처 :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(intra.lst.go.kr) * 서면 제출은 불가

- 협조 요청 사항 : 소속또는 관 내 노인복지관등 대상 안내(공문)및 홍보
- 세부 사항 문의 :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연명의료운영관리팀(02-778-7561)

- 붙임 : 1. 2022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안내 1부.
 2. 연명의료결정제도 홍보자료(리플릿, 포스터) 각 1부. 끝.

보건복지부장관



수신자 17개 시도, 전국 시군구,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,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중앙회,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

주무관 **김다현** 행정사무관 **정호진** 생명윤리정책 전결 2022. 3. 23.
 과장 **성재경**
 협조자 사회복지사무관 **전미정**
 관
 시행 생명윤리정책과-661 (2022. 3. 23.) 접수
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(어진동) 4층 생명윤리정책과 / <http://www.mohw.go.kr>
 전화번호 044-202-2616 팩스번호 044-202-3943 / dahyun7@korea.kr / 대국민 공개